

제 362 호

1973. 6. 13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 백 식

편집 : 공보실장 김 진 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444·6090

시 보

차 매

○ 조 례	
제 758 호	서울특별시신림지구 및 신림추가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3
제 759 호	서울특별시신림지구 및 신림추가지구토지 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 7
제 760 호	서울특별시천호지구토지 구획정리 분담금 부과징수조례..... 8
제 761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창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 9
제 762 호	서울특별시천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9
○ 고 시	
제 4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및 지적승인변경..... 13
제 4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및 지적승인변경..... 14
제 4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및 지적승인변경..... 14
제 49 호	일단의주택지구성사업실시 계획인가..... 15
○ 공 고	
제 69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적 업체지적 및 지적취소 공고..... 15
○ 공인신증 (개각) 신청서 (15 개) 19
○ 사 령 2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579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신림지구 및 신림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석
1973년 4월 12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58 호

서울특별시신림지구및신림추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림지구 및 신림추가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사업기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구의범위) 이 지구는 신림지구 및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지구라 칭하고 사업시행지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림, 봉천, 독산, 사당동등 1,641,555 평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세비지 매각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신림지구 및 신림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부담금 부과정수준에 의한 분담금으로 보충한다.

제 4 조 (종전토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가필의 면적은 법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천제의 토지대장 및 일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여 별도로 실측 기타 방법의 의거 면적을 장 단정은 그 면적에 의한다.

제 5 조 (평정가격) 정리전주의 토지각권의 평정가격은 그 위치, 면적, 연적, 고저, 간습, 교통, 환경등을 참작하여 사유재산상의 뒤원회의 실의준 거쳐 시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6 조 (토지의사용) 시장은 사실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구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토지의관리) 시장은 환지계획지를 지정하고 농작물 관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관지계획지를 준수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조 (증명및분할) 이 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의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적 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수 있다.

(2) 승전토지 및 환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동계획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 9 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 이 지구에 환지계획은 가산면적방법에 의하고 법제 48 조 내지 제 51 조, 제 53 조 및 제 55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하여 증전의 토지 또는 그토지근처에 설정함을 원칙으로하며 제 3 항 내지 제 7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증전위 최근처에 환지할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증전의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기관이 있는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된 건물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철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 1 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 3 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권리면적보다 증환지 면적은 제 5 조에 의한 철리후의 범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증진으로 정수한다.

(6)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에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는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전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증진으로 정수한다.

(7) 기존 건물로서 주된 출입구 이외의 벽에 신설도로가 책정되거나 또는 공사로 인하여 표저가 심하여 건물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상공수익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p>토지의 면도부담은 1/2 을 감할수 있다.</p>	<p>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8) 공용부담은 중전의 토지의 형상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구분하고 차등을 두어 부담하게 할수 있다. 다만 현황과 지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 11 조 (환지예정지지정) 법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서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묘·과·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 그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1. 1 급지 : 공부상대 (塙) 또는 기존건물이 점유한 토지 2. 2 급지 : 공부상전 (田) 인 토지 3. 3 급지 : 공부상단 (畷) , 임 (畝) , 장중지 (雜種地) 및 기타 토지</p>	<p>제 12 조 (가환지예정지지정) 기존건물이나 공작물과 이선 또는 법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임질변경 행위적하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때에는 전조와 환지예정지 지정전에 가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 10 조 (특별지의 환지계획) ① 중전 토지의 지적이 65㎡ 이하 미달되거나 또는 평평가격이 근소한 토지는 환지권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 1,000 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시행상 시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90㎡ 미만으로 환지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상의 무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환지 할수 있다.</p>	<p>제 13 조 (청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증감면적에 따라 지정살급을 정수 또는 교부할수 있으나 환지권부 구교가 있는 , 이는 즉시 이권 청산 하여야하나.</p>
<p>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p>	<p>제 14 조 (청산기준)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환지로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평정가격을 승산 금액으로하며 이는 분할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p>

② 전항의 청산금을 분할정수하거나 분할표부할 때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이자율 가산한다.

제 15 조 (환지처분)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일부 완료지역 또는 사업중결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중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환지처분을 하있을때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6 조 (채비지의 채적및관리처분) 사업비에 상당할 채비지는 시가지 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채적할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용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제 65조에외하 옥탁등기 절차중 종료하였을 때에는 환지처분지정서 및 관리선경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대리인제출) 당해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지아나할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9 조 (토지소유자및임차권자명외신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등 청구하지 못한다.

제 20 조 (토지소유자의 자비공사) ① 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비로 공사를 시공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할수있다.

② 전항의공사가 준공되었을때에는 공동 부담을 감지(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제 21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이 사업 시행시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국부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신림지구 및 신림주가지
구토지구획정리 분담금부과징수조례발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75호

서울특별시신림지구 및 신림
주가지구토지구획정리분담
금부과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 127 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림지구 및 신림
주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지구
내 또는 인접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로부터 분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부과총액) 분담금의 부과총
액은 구획정리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지출될 일체의 경비에서 다음
각호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부과액은 법시
행령 제 38 조에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보조금
2. 세비지 (보유지) 매각대금
3. 기타수입

제 3 조 (분담금 부과기준) ① 분담금
은 구획정리인가전과 판지지정 당
시의 토지평평가액의 증차액 또는
판지지정면적의 증전 지특별 차액
에 의하여 부과한다. 증전 토지
평평가액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한
부동산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식산량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판
지과분시에는 노선가산율량법에 의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분담금감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분담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에 해당되는 토지를 취득
하였을 때
2. 구획정리를 위하여 노력이나
출세한 제증하였을 때

제 5 조 (납입방법) 분담금의 부과시
기, 납입기간, 납입방법, 납입장소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채납처분) 분담금을 납입기
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및 지방채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7 조 (질산) 구획정리로 인하여
수지결산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분담금을 수정하거나 또는 공
공이익을 위하여 제공시킬수 있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부총리의 승인을 거쳐 제정 한
서울특별시 천호지구 토지구획정리분
담금부과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청 양택식

1973년 4월 12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362 호

서울특별시천호지구 토지
구획정리분담금 부과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 127 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7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호지구토지구획정
리사업 (이하 #구획정리 #라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지구내 또는 인접지구내의 토
지소유자로부터 분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부과종액) 분담금의 부과
액은 구획정리불우 하역 지출되거나
지출될 일체의 경미에서 다음
각호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부과액은 법시
행령 제 38 조에 정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보조금
2. 체비지 (보유지) 매각대금
3. 기타 수입

제 3 조 (분담금부과기준) ① 분담금은
구획정리인가전과 환지지정 당시의
토지피정가격의 증가액 또는 환지
지정면적의 증감 지부별 차등에
의하여 부과한다. 증감 토지평평가
격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 한 부농
산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
직선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며 환지
처분시에는 노선가산률방법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공동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분담금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에 해당되는 토지를 제공하였을 때
2. 구획정리권 위하여 노력이나 시설을 제공하였을 때

제 5 조 (납입방법) 분담금의 부과시기, 납입기간, 납입방법, 납입장소는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세납처분) 분담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세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7 조 (결산) 구획정리로 인하여 수지결산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분담금을 추징하거나 또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제공시킬 수 있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 서울특별시 자충자청비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란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대 식

1973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761 호

서울특별시자충자청비장설치조례중

서울특별시자충자청비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자랑의 수리 그 부속물의 제작개량 및 검사」를 「자랑의 수리 그 부속물의 제작, 개량, 검사, 자충자충증번호표의 제작 및 정비사 양성」으로 한다.

제 3 조 중 제 4 호를 제 6 호로 하고 제 4 호와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충자충증번호표 제작에 관한 사항
5. 자충자청비사 양성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서울특별시 천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 대 식
1973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 762 호

서울특별시천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호지구회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및 사업비 부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구의범위) 이 지구는 천호토지구회정리지구라 칭하고 사업시행지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동, 길동, 성내동, 둔촌동, 명일동등 785,000평으로 한다.

제 3조 (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세비제외각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천호지구토지구획심리 상담금부과징수조례에 의한 분담금으로 보충한다.

제 4조 (중건토지) 재개발부의 기준이 될 중건토지의 각 필의 면적은 법제 32조의 구분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입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여 별도로 승속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 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

제 5조 (평정가액) 전리전후의 토지 각 필의 평정가액은 그 위치, 형상, 면적, 고저, 간섭, 교통, 환경등을 참작하여 시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조 (토지의사용) 시장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구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 7조 (토지의판리) 시장이 환지에 정지불 지경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에 정지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판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조 (증명및분할) ①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재증명서를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중건토지 및 환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계획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 9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이지구와 환지계획은 가산면적방법에 의하고 법제 48조 내지 제 51조, 제 53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중건의 토지 또는 그 토지근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 3항 내지 제 7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건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공용지 및 계획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위치근처에 환지불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반환지 지정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 공공일 현재 국가기관이 있는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공공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작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환지하서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권리면적 보다 승환지된 면적은 제5조에 의한 정리의후의 평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감산으로 정수한다.

⑥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한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공기간내에 승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승환지불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환지 면적은 전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감산으로 정수한다.

⑦기존건물로서 수평 축립구 이외의 면에 신원도로나 벽성되거나 또는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건물구조불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수익을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여도부담은 1/2를 감할 수 있다.

⑧항동부담은 종전의 노식의 영향을 각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차감할 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면적과 기록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담지 : 공부상대(空)
 - 또는 기존건물이 접사한 노식
 2. 2담지 : 공부상전(空) 및 토지
 3. 3담지 : 공부상남(空), 임(林), 잡종식(雜種) 및 기타 토지
- 제10조(특별지외근지 제적) ①공인 토지의 지적이 65㎡에 미달하거나 또는 평정가격이 단순한 노적은 환지불 교부하지 아니하고 감산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시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90㎡ 미만으로 환지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상의 불도 지적이 수록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판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행 기준시설선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p>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11 조 (환지에정지 지정) 법 제 5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된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 12 조 (가환지에정지 지정) 기존 건물이나 공작물의 이권 또는 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 행위허가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조의 환지에정지 지정전에 가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p> <p>제 13 조 (청산) 환지에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증감면적에 대한 가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할 수 있으나 환지처분 목적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p> <p>제 14 조 (청산기준)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환지로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평중가격을 증산 금액으로 하며 이는 분할징수 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산금을 분할징수 하거나 분할교부할 때에는 임대료불 기준으로 한 이자를 가산한다.</p> <p>제 15 조 (환지처분)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일부 완료지</p>	<p>역 또는 사업중결의 형편상 부족이한 경우에는 공사중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환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 16 조 (체비지의책정 및 관리처분) 사업비에 상당될 체비지는 시가지성격의 추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지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 처분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p> <p>제 17 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 65조에 의한 촉탁등기 결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환지확정지정서 및 환지설명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18 조 (대리인 제출) 당해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	---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 호

도시계획시설(소로)

일부및 지적승인변경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소로)일부 및 지적승인 변경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동법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4. 12.

서울특별시 장

제 19 조 (토지소유자및 입차권자명의 신고) 토지소유자 및 입차권자가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게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 20 조 (토지소유자의 자비공사)

①법제 39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자비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건축의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강동부담을 1급지(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제 21 조 (시정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칙은 이 사업시행실시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가,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유형	번호	목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6㎡	68㎡	북가좌동 77(전)	북가좌동산 13-1	
변경	"	"		"	"	"	"	위치변경
기정	"	"		"	80	북가좌동산 13-1	"	
변경	"	"		"	"	"	"	위치변경

나. 도 면 : 별첨

㉞ 서울특별시고시 제 4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및 지적승인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제 3호(69.1.18)로 시선정정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지적승인변경을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3. 4. 12.
 서울특별시장

가. 노선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구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존	소로	4		4m	61m	석관동 332-31	석관동 332-643	
변경	"	4'		4m	61m	"	"	위치일부변경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에 보관

㉟ 서울특별시고시 제 4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및 지적승인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제 35호(72.6.3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변경을 도시계획법제 12조와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의 규정이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3. 4. 12.
 서울특별시장

가. 노선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구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존	소로	2		4m	138m	쌍문동 424-10	쌍문동 424-94	
변경	"	2'		4m	138m	"	"	위치변경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 제 49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제 25조 및 제 26 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권
한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
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아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3. 4. 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동작동 307 의 3 번지

2. 사업의 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명칭: 반포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면적: 153, 539 평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 주 용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1973. 4.
준공예정일: 1974.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선불의 소
제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의
의 권리명세 (생략)

6. 토지 또는 건물외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생략)

7. 인가내용 별정 인가도서 (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 69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을
향상지정업체지정 및
지정 위 소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향상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 지원조령
제 3 조 및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향
상 지정업체와 지정 위 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3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신 규 지 정				
지정 번호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수 출 품 명
102	삼원통상주식회사	서영일	중로구중로 5가 255-3	가 발
210	서 광 사	김영배	중구명동 1가 72	귀금속빛 수정체출
314	무궁화주식회사	황창후	동대문구중화동 119	메리야스
321	라 비 정 농 사	김분규	동대문구중화동 110-10	시 계
322	성 한 사	윤석봉	동대문구회경동 187-31	핸드백
323	백양스벤레스공업사	박해영	동대문구상봉동 333-4	스벤레스 물
403	자이안트분산(주)	백응서	성동구구의동 211-1	양 말
455	한성주철제작소	김성호	성동구용봉동 190-2	나전철기
480	생룡기계공업주식회사	이재원	성동구화양동 168-27	휠면기, 원면기
481	주식회사고려의류	김동우	성동구신당동 17	의 의 류
482	부이연직공업사	박인양	성동구성내동 142	염 색
483	일회제약주식회사	김원철	성동구송정동 43-16	인삼차
484	상보연직공업사	조동식	성동구성수동 2가 277-124	염 색
485	동림양말공업사	이봉업	성동구성수동 1가 527	양 말
501	대양화학공업사	김장건	성북구종암동 115-7	접착제



지정 번호	기 업 명	대표자	소 재 지	수출 품명
508	삼 물 물 산 주식 회사	백 봉 기	성 북 구 수 유 동 23-6	이 액 구 가 방
516	신 성 화 학 사 진 공 업 사	김 준 결	성 북 구 방 학 동 161-1	인 과 자
538	유 향 화 학 공 업 주 식 회 사	정 판 석	성 북 구 하 월 곡 동 9 5J-293	합 경 수 지 제 품
542	유 일 제 랑 기 계 작 소	이 용 한	성 북 구 정 남 동 266-183	온 도 제, 배 온 제, 비 공 제
544	국 제 나 일 문 주 식 회 사	김 용 기	성 북 구 창 동 108-4	양 막
620	대 신 염 지 봉 업 주 식 회 사	이 병 호	서 대 문 구 죽 동 85-9	염 색
629	주 식 회 사 이 승 상 사	백 진 일	서 대 문 구 대 조 동 89-202	인 납 차
630	진 성 신 업 사	최 승 용	서 대 문 구 역촌 동 17-3	결 범
631	금 강 합 설 주 식 회 사	최 중 현	서 대 문 구 용 암 동 491-9	양 단
632	삼 양 물 산 주 식 회 사	한 승 민	서 대 문 구 갈 현 동 197-2	가 발
705	동 남 아 성 유 공 업 사	손 명 규	마 보 구 도 화 2 동 39-4	세 타
718	창 신 설 유 공 업 사	박 창 건	마 보 구 영 리 능 96	에 리 야 스, 인 견 연 시
808	동 양 산 업 사	김 난 영	용 산 구 이 태 원 2 동 212	에 리 야 스
915	대 하 후 보 기 공 업 주 식 회 사	이 상 덕	영 등 포 구 양 병 동 4 가 15	골 닥, 안 바, 조 립 용 원 구
928	중 앙 강 철 공 업 주 식 회 사	박 치 희	영 등 포 구 고 처 동 25-2	금 속 제 주 용 용, 도 금 제 동 의 부 품
931	조 광 염 직 주 식 회 사	이 연 희	영 등 포 구 염 창 동 203-4	염 색
948	용 창 설 유 공 업 사	김 생 수	영 등 포 구 염 창 동 63	염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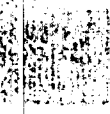
지정 번호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수출품명
969	일신화학공업주식회사	임오순	영등포구목동191-56	합성수지제품
970	대영화학공업주식회사	고광용	영등포구목동191-40	합성수지제품
	계	35		



2. 지정 취소

지정 번호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수출품명	취 소 사 유
403	삼익 피아노사	이효익	성동구성수동2가308-4	기타, 피아노	보고서 및 제출된 73수출제화전부
501	은하실업사	이약	성북구인암동4가23-2	가발	업체명의 및 대표자변경
516	동양나연공장	김기해	성북구수유동41	나염	업체명의 및 대표자변경
551	우성상여주식회사	연귀삼	성북구장위동230-83	가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변경
921	한산기업사	박준덕	영등포구산대방동340-5	가늌집	자진취소요청
915	우진공업주식회사	양길희	영등포구시흥동663-5	스텐에스 양식기	국정기업으로 변경폐업
928	태페비즈지수공업사	이기철	영등포구봉천동63-5	비즈백	대용공업사로 변경폐업
931	신안물산주식회사	박준근	영등포구상도2동255	나이론, 다후다	동창염색공업사로 변경, 제외
	계	8			

공 인 의 신 조 (개 가)		1973년 4월 13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 유	판인규정제 3조 위반으로 개자	
2. 서 체 규 격	진 자체 2.4 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인	
4. 사 용 개 시	73 . 4 . 10 . 00 : 00	
5. 비 치 처·넛 판 수 자	서울특별시 경찰국 경무과 경 무 과 장	
6. 공 인 의 모 형		
공 인 의 신 조 (개 가)		1973년 4월 13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 유	서울시직제제 76 조 (청와대경비대) 로 69년 7월 2일 승 인된후 현재까지 신조하지 않았으므로 신조	
2. 서 체 규 격	진 자체 2.1 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청와대 경비대장인 및 개인	
4. 사 용 개 시	73 . 4 . 10 . 00 : 00	
5. 비 치 처·넛 판 수 자	청와대 . 경비대 행정계 행정계장	
6. 공 인 의 모 형		 



중 인 의 선 조 (개 과)		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 유	관인 규정제 3 조 위반으로 개과	
2. 서 체 규 격	전 자 체 2.1 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중부경찰서장인 및 제언	
4. 사 용 개 시	73. 4. 10. 00 : 00	
5. 비 치 처 및 판 수 자	중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	
6. 공 인 의 모 형		
관 인 의 선 조 (개 과)		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 유	관인 규정제 3 조 위반으로 개과	
2. 서 체 규 격	전 자 체 2.1 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중부경찰서장 인	
4. 사 용 개 시	73. 4. 10. 00 : 00	
5. 비 치 처 및 판 수 자	중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	
6. 공 인 의 모 형		

공 인 의 신 조 (개 각)		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 유	판인규정 제3조 위반으로 개각	
2. 서 체 규 격	전 자 체 2.1 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남대문 경찰서장 인	
4. 사 용 개 시	73 . 4 . 10 . 00 : 00	
5. 비치처및관주자	남대문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	
6. 공 인 의 모 형		
공 인 의 신 조 (개 각)		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 유	판인규정 제3조 위반으로 개각	
2. 서 체 규 격	전 자 체 2.1 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서대문 경찰서장 인	
4. 사 용 개 시	73 . 4 . 10 . 00 : 00	
5. 비치처및관주자	서대문경찰서 경무과 과무과장	
6. 공 인 의 모 형		

공인외신조 (개각)		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유	판인규정 제3조 위반으로 개각	
2. 서체규격	전 자체 2.1 센치미터 정방형	
3. 공인명	동대문경찰서장 인	
4. 사용개시	73. 4. 10. 00 : 00	
5. 비치처및관수자	동대문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	
6. 공인외모형		
공인외신조 (개각)		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유	판인규정 제3조 위반으로 개각	
2. 서체규격	전 자체 2.1 센치미터 정방형	
3. 공인명	용산경찰서장인	
4. 사용개시	73. 4. 10. 00 : 00	
5. 비치처및관수자	용산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	
6. 공인외모형		

공인외설조 (개각)



1973년 4월 일
신철인 경찰국장

1. 이 유	관인규정제 3조 위반으로 개각
2. 서 체 규 격	진 자책 2.1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청량리경찰서장 인
4. 사 용 개 시	73. 4. 10 . 00:00
5. 비치처 및 관수자	청량리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
6. 공인 의 모형	
공인외설조 (개각)	
1973년 4월 일 신철인 경찰국장	
1. 이 유	관인규정제 3조 위반으로 개각
2. 서 체 규 격	진 자책 2.1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마포경찰서장 인
4. 사 용 개 시	73. 4. 10 . 00:00
5. 비치처 및 관수자	마포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
6. 공인 의 모형	

28-24 제362호

시 보

1973.4.13

<u>공 인 의 신 조 (개 각)</u>		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 유	판인규정 제 3조 위반으로 개각	
2. 새 체 규 격	권 자체 2.1 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영등포경찰서장 인	
4. 사 용 개 시	73. 4. 0 . 00:00	
5. 비치처 및 관수자	영등포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	
6. 공 인 의 모 형		
<u>공 인 의 신 조 (개 각)</u>		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 유	판인규정 제 3조 위반으로 개각	
2. 새 체 규 격	권 자체 2.1 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성동경찰서장 인	
4. 사 용 개 시	73. 4. 0 . 00:00	
5. 비치처 및 관수자	성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	
6. 공 인 의 모 형		


제 362 호

시 부

1973.4.13 28-25


공인외신조 (개각)

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 유	관인규정제 3조 위반으로 개각
2. 서 체 규 격	전 자체 2.1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노량진경찰서장 인
4. 사 용 개 시	73. 4. 10. 00:00
5. 비치처 및 관수자	노량진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
6. 공인외모형	

공인외신조 (개각)

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 유	관인규정제 3조 위반으로 개각
2. 서 체 규 격	전 자체 2.1센치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서부경찰서장 인
4. 사 용 개 시	73. 4. 10. 00:00
5. 비치처 및 관수자	서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
6. 공인외모형	


28-26 제 362 호

시 보

1973.4.13

공 인 의 기 표 (개 각)

1973년 4월 일
신청인: 경찰국장

1. 이 유	관인규정 제 3 조 위반으로 개각
2. 서 체 규 격	건 직체 2.1 세치 미터 정방형
3. 공 인 명	북부경찰서장 인
4. 사 용 개 시	73. 4. 10 . 00:00
5. 비치처 및 관수자	북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과장
6. 공 인 의 모 형	

사 령

◎ 1973. 4. 11.

운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충정
상경과 근무를 명함.

청소제 2 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창희
운수행정과 근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유인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종로구보건소 지방의무기과 (보건지도과장) 양일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용산구보건소 지방의무기과 (보건지도과장) 우정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은군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 김정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보건기원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총무과 기계기사보 조구현
경기도 전출을 명함.

대법원 건축기사 최정일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건축기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 1973. 4. 12.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농지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병원 지방간호기과 화규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각부기원보 시보에

임함.

3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기원보 시보에

임함.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보건기원보시보에 임함.

유만수

김진수

장영숙

김중섭

<p>영등포구보진소 근무를 명함. (행정)</p> <p>성 동 구 지방행정서기보 수도사업소 이 지 호 지방전기지원보에 임함. 5호복을 급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p> <p>서 대 분 구 조 직 부 지방전속기사보 주 효 증 지방전속기사보에 임함. 2호복을 급함.</p> <p>서 대 분 구 (주택관리관실 과장) 근무를 명함.</p> <p>주 택 전 설 과 조 직 부 지방전속기사보 이 완 식</p>	<p>지방전속기사보에 임함. 2호복을 급함. 주택건설과 근무를 명함.</p> <p>마 포 구 지방조무보조수 유 효 현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2호복에 급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p> <p>마 포 구 지방행정서기 유 한 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전공을 명함.</p> <p>© 1973.4.13.</p> <p>영 등 포 구 지방행정사무관 (정순과장) 김 성 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명함.</p>
<p>서 울 북 별 시 장</p>	